

■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표 3]

스마트농업 관련 교육과정(제7조제2항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영 제7조제1호에 따른 시설원예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원예 분야의 스마트농업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2호가목에 따라 40시간 이상으로 구성된 원예 분야 교육과정을 이수(자격 취득 전 이수를 포함한다)해야 한다.

나. 영 제7조제2호에 따른 축산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축산 분야의 스마트농업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2호나목에 따라 40시간 이상으로 구성된 축산 분야 교육과정을 이수(자격 취득 전 이수를 포함한다)해야 한다.

2. 개별기준

가. 원예 분야 교육과정

- 1) 원예 분야 스마트농업의 이해
- 2) 원예 분야 정보통신기술시설·장비 선택 및 운영관리
- 3) 원예 분야 생산관리 및 정보통신기술기반 환경관리
- 4) 원예 분야 시설 및 장비·안전관리
- 5) 원예 분야 정보통신기술기반 데이터 수집 및 분석
- 6) 원예 분야 상담 및 교육방법

나. 축산 분야 교육과정

- 1) 축산 분야 스마트농업의 이해
- 2) 축산 분야 정보통신기술시설·장비 선택 및 운영관리
- 3) 축산 분야 생산관리 및 정보통신기술기반 환경관리
- 4) 축산 분야 시설 및 장비·안전관리
- 5) 축산 분야 정보통신기술기반 데이터 수집 및 분석
- 6) 축산 분야 상담 및 교육방법

3. 원예 분야 교육과정의 세부 교과목 및 축산 분야 교육과정의 세부 교과목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